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10호서식] <개정 2023. 3. 14.>

파주시 공고 제2026-2949호

지방세 공시송달

○ 송달 대상자의 성명: 첨부서류 참조

○ 서류의 송달지: 첨부서류 참조

○ 서류의 명칭: 납세고지서, 독촉고지서

○ 서류의 내용: 2026년 10월 취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, 2026년 8월 취득세 독촉장

위의 서류를 2026년 10월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(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30일로 변경하여)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11일

파 주 시 장 

비고 1.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

2. 서류가 납세고지서,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, 주요세목,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

3.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

4.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

5.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(*)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.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.

가.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(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)

나. 서류의 송달지 중 「도로명주소법」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

6.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